

第244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5號

國會事務處

2003年12月30日(火) 午前10時

議事日程(第5次本會議)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건선거운동관련긴급현안질문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한상범)임명동의안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이기욱)임명동의안
4. 국회의원(朴明煥)체포동의안
5. 국회의원(朴柱宣)체포동의안
6. 국회의원(정대철)체포동의안
7. 국회의원(朴在旭)체포동의안
8. 국회의원(朴柱千)체포동의안
9. 국회의원(李訓平)체포동의안
10. 국회의원(崔燉雄)체포동의안
11.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12. 國籍法中改正法律案
13.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
14. 刑法中改正法律案
15.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代案)
16. 檢事的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7. 法官등의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8.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
19.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20.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21. 청소년활동진흥법안
22. 청소년복지지원법안
23. 農業機械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24. 農水産物流通公社法中改正法律案
25.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26. 야생동·식물보호법안
27.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28.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29. 악취방지법안
30. 國家技術資格法改正法律案(代案)
3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32. 농어업인부채경감에關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33.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關한특별법안(대안)
34. 2004년도예산안
3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6.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7.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附議된案件

○ 국무위원(과학기술 吳明)인사	3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전선거운동관련긴급현안질문	3
○ 의원신상발언	4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한상범)임명동의안	5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이기욱)임명동의안	5
4. 국회의원(朴明煥)체포동의안	6
5. 국회의원(朴柱宣)체포동의안	6
6. 국회의원(정대철)체포동의안	6
7. 국회의원(朴在旭)체포동의안	6
8. 국회의원(朴柱千)체포동의안	6
9. 국회의원(李訓平)체포동의안	6
10. 국회의원(崔燉雄)체포동의안	6
11.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 · 전용학 · 김황식 · 장광근 · 김종하 · 박명환 · 오세훈 · 김정숙 · 이강래 · 윤한도 · 권태망 의원 발의)	11
12. 國籍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 · 조배숙 · 최명현 · 김상현 · 전용학 · 강운태 · 임종석 · 남궁석 · 이양희 · 이재정 · 최용규 · 추미애 · 김화중 · 김태홍 · 전갑길 · 이창복 · 최선영 · 김효석 · 박주선 · 심규철 · 홍재형 · 김성순 · 강숙자 · 최영희 · 설훈 · 장성원 · 유재규 · 정세균 · 송석찬 · 권기술 · 이연숙 의원 발의)	12
13.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2
14. 刑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심규철 · 나오연 · 김동욱 · 권기술 · 김영일 · 전용원 · 민봉기 · 임진출 · 강숙자 · 이상배 · 정우택 · 이우재 · 이양희 · 이승철 · 오세훈 · 김락기 · 김용학 · 엄호성 · 김성조 · 박혁규 · 윤경식 · 오경훈 의원 발의)	12
15.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2
16. 檢事の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2
17. 法官등의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
18.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
19.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
20.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고흥길 · 배기선 · 김성호 · 김일윤 · 정범구 · 정동채 · 이협 · 강신성일 · 권오을 · 김병호 · 신기남 · 김경재 · 김택기 · 최영희 · 강성구 · 설훈 · 김문수 · 남경필 · 황우여 · 송영길 · 김희선 · 김태홍 · 박명환 · 안상수 · 김운용 · 김원기 · 김옥두 · 유재건 · 이미경 · 김용갑 · 김정부 · 이상득 · 김홍신 · 장성원 · 이훈평 · 한화갑 · 김성순 · 송석찬 · 이창복 · 김영환 · 장광근 의원 발의)	16
21. 청소년활동진흥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고흥길 · 배기선 · 김성호 · 김일윤 · 정범구 · 정동채 · 이협 · 강신성일 · 권오을 · 김병호 · 신기남 · 김경재 · 김택기 · 최영희 · 강성구 · 설훈 · 김문수 · 남경필 · 황우여 · 송영길 · 김희선 · 김태홍 · 박명환 · 안상수 · 김운용 · 김원기 · 김옥두 · 유재건 · 이미경 · 김용갑 · 김정부 · 이상득 · 김홍신 · 장성원 · 이훈평 · 한화갑 · 김성순 · 송석찬 · 이창복 · 김영환 · 장광근 의원 발의)	16
22. 청소년복지지원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고흥길 · 배기선 · 김성호 · 김일윤 · 정범구 · 정동채 · 이협 · 강신성일 · 권오을 · 김병호 · 신기남 · 김경재 · 김택기 · 최영희 · 강성구 · 설훈 · 김문수 · 남경필 · 황우여 · 송영길 · 김희선 · 김태홍 · 박명환 · 안상수 · 김운용 · 김원기 · 김옥두 · 유재건 · 이미경 · 김용갑 · 김정부 · 이상득 · 김홍신 · 장성원 · 이훈평 · 한화갑 ·	

김성순·송석찬·이창복·김영환·장광근 의원 발의)	16
23. 農業機械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
24. 農水産物流通公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
25.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
26. 야생동·식물보호법안(정부 제출)	19
27.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
28.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
29. 악취방지법안(정부 제출)	20
30. 國家技術資格法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0
3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22
34. 2004년도예산안	23
3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23
36.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3
37.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25

(11시10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0시 회의는 긴급현안질문입니다. 각 당 사정과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한 시간이 넘도록 긴급 소집한 회의를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이 점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 국무위원(과학기술 및명)인사

(11시12분)

○議長 朴寬用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임명되신 吳明 장관으로부터 인사가 있습니다.

吳明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科學技術部長官 吳明 과학기술부장관 吳明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8년 동안 국민소득 1만 불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선진국 진입의 꿈도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하루빨리 국민소득 2만 불대를 달성하고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부가 나라의 모든 과학기술 역량을 모으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국민소득 2만 불대를 달성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자가 예우받는 사회 그리고 과학기술자가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운영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노무현대통령불법사건선거운동관련긴급현안질문

(11시1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항 노무현대통령불법사건선거운동관련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예산안을 비롯해서 중요한 안건을 오늘 오후 2시부터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계가 11시를 훨씬 넘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점심 시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발언자를 총무들 간에 좀 교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1인당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질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간에도 이 10분을 지킬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李允盛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盛 議員 현안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

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어제 선관위 위원장에 대한 출석요구서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 선관위 柳志潭 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議長 朴寬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부터 아침에 문서가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으로서 중요한 사안을,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두었습니다. 합의체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기 전까지는 국회에 나와서 아무런 대답할 거리가 없다 하는 통보입니다.

아침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겠으나 일단 국회의 결의사항이니까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의장의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시간까지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盛 議員 이런 경우에는 현안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議長 朴寬用 우선 발언부터 하십시오.

○李允盛 議員 그러면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문을 누구한테 합니까?

(장내 소란)

○議長 朴寬用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러면 총리하고 장관을 왜 불렀습니까?

오늘 회의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한다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난 연후에 적절한 시간을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서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모두의 의견이 그렇다면 오늘 회의를 유예시키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전 회의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議長 朴寬用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계신 분들도 좀 앉아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긴급현안질문의 계속 실시 여부

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신상발언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요상 의원님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마는, 오늘부로 위원장 직을 사직한다는 사직서가 어제 날짜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상 의원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가 맡아 왔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안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로 위원장 직을 떠나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4일에 전임 강재섭 위원장님의 뒤를 이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을 맡았습니다.

저는 위원장 직을 맡아서 개혁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 챙겨 봤습니다. 어느 당에서도 제대로 정치개혁안이 제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빨리 좀 각 당에서 개혁안을 마련해서 정개특위에다 제출해 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지지부진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8월 말까지 두 번에 걸쳐서 공문으로 각 당 대표에게 “8월 말까지 각 당의 정치개혁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9월 초에야 비로소 각 당의 안이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서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장님을 찾아뵙고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로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이 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에

서 각 당의 의견을 취합을 해서 그것을 조정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대와는 어긋나게 범개혁협의회에서 독자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정개혁위에서 협의를 거듭했습니다. 애당초 열린우리당에서는 국회의원 수를 299명으로 증원을 하되 지역구 의원 수는 현행대로 227명으로 동결하고……

(○송광호 의원 의석에서 - 우리당이 어느 당인데요?)

열린우리당……

(○송광호 의원 의석에서 - 목요상 의원님 당 말이에요?)

열린우리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송광호 의원 의석에서 - 말을 제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 수는 227 현행대로 동결하고, 비례대표 의석 수는 현행 46석에다 26석을 보태서 72석으로 늘려서 299명으로 증원하자 이렇게 당론을 정해서 보내 왔는데, 범개혁협의회 안이 들어오니까 그 안대로 지역구 수는 28군대를 줄여서 199 그 의석 수로 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100명으로 늘려서 299명으로 확정짓자, 이렇게 당론을 수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 당 간에 절충한 결과 도저히 한 발짝도 진척이 안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과 자민련에서는 애당초 국회의원 수를 민주당에서 299명으로 늘려 잡자고 주장했던 그 안을 수정을 해서 현행대로 273석……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열린우리당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당론을 수정해서 자꾸 변경하는 바람에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또 자민련이 합의한 다수 의견도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지금 사실상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각 당 간사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뭔가 좀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의도를 해 봤지만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아예 간사가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아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

니다.

이런 상태하에서는 더 이상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기능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헌 사태가 발생하는 그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각 당의 대표나 원내 대표들이 머리를 짜내서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제 해명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이미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민간인 다섯 사람, 현역의원 세 사람입니다마는, 전부 사퇴를 해 버렸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개혁특위의 위원장이 오늘 사퇴를 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의 시한은 내일입니다.

따라서 이제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한 두 기구가 모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모레부터는 위헌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국민에게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제 신년 초가 되면 의장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섭단체 대표들과 회의를 통해서 조속히 이것을 복구하고 선거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을 드리면서 타협이 안 될 때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다수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천명합니다.

2.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한상범)임명동의안

3.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이기욱)임명동의안

(15시2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한상범)임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이기욱)임명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에 한상범과 이기욱을 각각 임명하기 위해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5조6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정부가 임명 동의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이들 2인에 대한 재산 신고 및 병역 사항은 지난 12월 20일자 국회공보에 각각 게재되어 이미 배부하였습니다. 이는 의식에 추가로 배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은 국회법 제112조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건의 투표를 한 장의 용지에 기록하는 연기명식 투표로 하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박중희 의원, 심재철 의원, 원희룡 의원, 오경훈 의원, 朴仁相 의원, 崔榮熙 의원, 김부겸 의원, 안영근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내정자 두 분에 대한 임명 동의 여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임명 동의 요청된 위원명 밑의 가부란에 임명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5시24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2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5매로서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상범)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투표수 215표 중 가 187표, 부 24표, 무효 4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한상범)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기욱)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총 투표수 215표 중 가 130표, 부 82표, 무효 3표로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기욱)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 국회의원(朴明煥)체포동의안
 - 5. 국회의원(朴柱宣)체포동의안
 - 6. 국회의원(정대철)체포동의안
 - 7. 국회의원(朴在旭)체포동의안
 - 8. 국회의원(朴柱千)체포동의안
 - 9. 국회의원(李訓平)체포동의안
 - 10. 국회의원(崔燾雄)체포동의안

(15시4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朴明煥)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朴柱宣)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정대철)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朴在旭)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朴柱千)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원(李訓平)체포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崔燾雄)체포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체포동의안 동의요청 이유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세 분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朴柱宣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朴柱宣 議員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

분!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저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의원 여러분께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위야 어찌되었든 간에 이 자리에 서게 된 제 자신이 무척 참담한 심정입니다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누를 끼쳤지 않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제가 행정부 재직 시 모셨던 상사, 선배, 그리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세상을 함부로 막되게 살아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신상발언을 삼가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잣대의 위선 검찰에 의한 위법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명예와 굴레가 씌워진 제 입장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늘 신상발언을 통한 것 외에는 없고, 저에 대한 법적인 보호막은 양식 있는 의원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판단 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원죄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요청한 체포동의 사실에 대해서는 저는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의 하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단 한 줄이라도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제 인격을 담보하고 인생 전부를 담보하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는 옷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00년 4월 13일 무소속으로 전남 보성·화순에서 출마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죽어 가는 저를 다시 재생시키겠다고 해서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왔습니다.

저의 먼 친척이 되고 중학교 선배가 되는 안상태, 당시 영업정지 상태에 있었던 나라중금사장이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세 번에 걸쳐서 2억 5000만 원을 제 동생을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몰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그것이 모두 제 선거 때 책 출판비용을 비롯한 선거자금으로 사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제 동생이 받았습니다. 안상태 사장이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가가 없이 저를 살린다는 일념으로 순수하게 도와준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공소 시효가 넘은 순수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그것도 책임이 없는 저에게 뇌물죄를 걸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체포동의요청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후뇌물

죄는 안상태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해야 성립이 되는데 어느 한 구석을 따져 보더라도 형법의 요건인 그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선수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체포동의서에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오라는 날짜에 미리 자진출석을 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로 도망 갈 것이며 검찰 스스로가 증거를 공개했고 제 자신이 자백했는데 무슨 증거를 인멸하겠습니까?

盧武鉉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자금을 받은, 그것도 나라중금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안희정 씨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행위자인 그분들은 처벌하지만 盧武鉉 대통령은 수혜자라는 측면에서 혐의가 없다고 불문에 부쳤습니다.

제가 동생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지원받은 이 선거자금이 盧武鉉 대통령과 어떤 것이 다른지? 저는 다른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법이 왜 朴柱宣에게는 적용되지 않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6월에 민주당이 분당되기 전에 洪思德 총무님과 鄭均桓 총무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법무부장관에게 정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 대해서는 회기 중 구속에 대한 동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소했어야 마땅합니다. 아직까지 6개월이 넘도록 기소도 못해 가지고 제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법치주의 검찰이고 법치주의에 있어서의 법무부 역할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민의의 전당에는 저와 같은 검찰의 부당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서 무죄를 받으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만일에 그런 분들이 구속이 되었다면 얼마만큼의 고통과 신음을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볼 때 이 국회의 권위를 찾고 검찰폭력의 피해자인, 희생자인 저에게 또 나름대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는 숨기거나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지우거나 없앨 수 없다는 제 신념을 다시 한번 믿으면서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오늘

이 검찰폭력을 없애는 원년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원년으로서 기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朴柱千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朴柱千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마포을 출신의 朴柱千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관련된 체포동의안은 2000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가 핵심 사안입니다. 즉 고 鄭夢憲 현대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도록 해 주었느냐의 여부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려서 검찰이 가당찮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당시에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의원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스무 분이었습니다. 지금의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스무 분 의원님들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고 鄭夢憲 회장을 2000년도 당시에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요구한 일이 전연 없었다고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당 소속 의원님들 간의 회의는 물론이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그 어디에서도 고 鄭夢憲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거론한 사실이 없었다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한 일이 전연 없었는데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증인으로 거론된 일이 없었는데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게 했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증인 제외 부탁을 받았다는 등 증인에서 빼 주었다는 등 검찰의 주장들은 죄를 만들기 위한 허구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마치 임신하지도 않은 처자에게 애를 낳았다고 뒤집어씌우는 그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본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릇된 검찰의 주장으로 인해서 당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 간사였던 李訓平 의원님 또 우리 한나라당 간사이셨던 林鎭出 의원님 그리고 지금 방금 신상발언하신 朴柱宣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일

로 명예가 심각히 훼손되고 정치생명까지도 위협당하고 계신 사안입니다.

국회 상임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는 일을 가지고 사실인 양 가장해서 죄를 묻고자 한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검찰이 침해하는 중대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정무위원장으로 권력을 남용한 정치검찰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의 문제만 해도 당시 후원금을 준 金潤圭 사장을 대질을 시켜 주고 또 같이 식사했던 두 사람 외에 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 보면 본인이 결백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입니다만, 검찰이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검찰은 지금 있지도 않았던 일을 근거로 적법한 후원금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또 인신까지도 구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검찰의 부당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스스로 세 번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나오면서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하면서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세간의 평판보다는 진실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회가 언제나 진실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朴明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朴明煥 議員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매우 어려운 때에 제 신상 문제로 심려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47년 된 제 대학 동기생이—평소 저를 후원해 온 사람입니다—작년 10월 중순에 저를 찾아와서 국제청에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괴롭고 억울하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IMF 때 회사가 어려워서 자금

출자를 했는데 그 자금 출처 규명과 탈세 혐의, 또 이 사람이 일본하고 거래를 하는데 외화 밀반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제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야당 의원이고 건교위원인데 세무조사에 관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안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자네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국장하고 담당 사무관에게 소명 기회를 한 번 마련해 준 것이 전부입니다.

제 친구 조 회장이라는 사람은 고려대학교 강사를 거쳐서 공학박사이고 우리나라 자동차기 설비의 일인자이며,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세 포탈이나 외화 밀반출을 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그 사람을 돕기로 했고, 어느 누구에게도 무슨 세금을 감면해 줘라, 깎아 줘라, 이런 부탁은 한마디도 한 일이 없습니다.

실제 나중에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제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는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고 했습니다. 자기하고 세무사 둘이 계산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이나 나왔다고 원망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무란 일이 있습니다.

제 친구 조 회장이 검찰에서 40시간 이상 계속 해서 조사를 받던 중에 아마 횡설수설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 친구가 진정서를 통해서 대가성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검찰에서는 이것을 대가성으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작년 11월에 당시 서울국세청장하고 식사를 한 번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정기국회 때 우연히 국회에서 만나서 식사 약속을 한, 오래된 지인이기 때문에 있는 일이지 이 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 친구와 저는 고대 1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같이 한, 땀과 살을 부닥뜨려 온 친구입니다. 제가 정계에 들어오기 전에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자동차 부품회사 ‘신일기공’이라는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때 제 친구가 현대자동차를 거쳐서 김창원 씨가 하던 지프차 만드는 ‘거화’라는 회사에 부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면 제 사무실에 들러서 품질보증도 빨리 해 주고, 개발도 시켜 주고, 공정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도움

을 주고, 납품도 시켜 주고, 선수금도 받아 주고, 입보도 서 주고 해서 사실 제가 어려운 사업을 할 때 큰 신세를 진 것이 사실입니다.

거꾸로 80년대 초가 되니까 제 친구가 이제는 자기가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고 사표를 내고 나와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아, 내 사무실에서 같이 하세”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던 사무실에 책상 2개 가지고 들어와서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친구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가 정계로 들어올 때 제 사무실을 통째로 넘겨준 사실이 있는데 그때 보증금을 받은 기억도 없고 집기를 돈 쳐서 받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 오늘의 사업을 일구게 된 창업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 입장입니다.

그 사람의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많은 친구들 중 저보고 비문을 써 달라고 해서 그 비석이 지금 서 있습니다. 또 좋은 가훈을 하나 부탁 하길래 제가 써 줘서 지금 집에도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어느 학교가 좋으냐, 무슨 과가 좋으냐 하고 꼭 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47년 동안 지기를 쌓아 온 친구이고 평소에 저를 늘 돕고 있는 사람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저에게 후원한 사실을, 여러분이 아마 지역에 있는 동료나 주민이 와서 부탁을 해도 당연히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소명해 줄 것입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린 행정을 너무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7년 된 동기생에게 무슨 청탁을 해서 제가 청탁 대가를 받겠습니까? 자유롭게 해명하면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을 꼭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다음은 朴在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朴在旭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북 경산·청도 출신 朴在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저의 불찰로 인하

여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먼저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계하고 있는 학원재단은 경영이 열악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부터 설립기금을 기여하겠다고 약속한 재단이사들이 기금을 납입하지 않아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에게 차입금을 염출하게 되었으나 변제할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여 학교 운영을 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후 4년제 대학을 설립하면서 2년제 대학에서 전용한 예산이 일부 있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 차입금과 4년제 대학으로 전용한 예산을 본 의원이 변제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므로 향후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경에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다 받고 마쳤습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대학의 어려운 사안들을 참고하시어 본 의원이 40여 년간 전 재산을 바쳐 그 시대에 필요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업에 전념한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李訓平 의원 신상발언 신청하셨습니다.

(○李訓平 議員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李訓平 議員**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관악갑 지구 출신 李訓平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12월 9일 어머니 상중에도 불효를 무릅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해명서를 보내 드렸으며, 앞서 朴柱千 당시 정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자세히 해명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의 해명 발언은 삼가고 싶습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정몽헌 현대건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2개 건설업체의 공사를 청탁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제3자가 많은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2개의 건설회사 중 친구의 D회사는 아예 저와는 무관합니다. 당시 학교 후배가 사장인 W사는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로서 공사를 수주하여 일을 하고 있는데 난공사가 돼 가지고 많은 적자를 보고 있으므로 다른 하도급 공사에 참여하려고 해도 제한입찰을 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다는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서 제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현대건설에 이런 내용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바 없음은 검찰 체포동의서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니고 제3자가 이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검찰이 출두 요구한 시간에 자진 출두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두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느닷없이 구속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불쑥 제출한 검찰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도록 만든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이상 7건은 국회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연기명식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들께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7건의 국회의원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한 장의 투표용지에 모두 기재하는 연기명 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해당 안건명 밑의 가부란에 찬성하시는 분은 ‘가’로, 반대하시는 분은 ‘부’로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시면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6시14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朴寬用 의장, 金台植 부의장과 사회교대)

○副議長 金台植 의원님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6시2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산한바 236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36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국회의원(朴明煥)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33표, 부 198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朴明煥)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회의원(朴柱宣)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43표, 부 188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朴柱宣)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국회의원(정대철)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71표, 부 159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정대철)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회의원(朴在旭)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67표, 부 165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朴在旭)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회의원(朴柱千)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34표, 부 197표, 기권 4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朴柱千)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회의원(李訓平)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43표, 부 186표, 기권 5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李訓平)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국회의원(崔燾雄)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6표 중 가 99표, 부 133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국회의원(崔燾雄)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전용학·김황식·장광근·김종하·박명환·오세훈·김정숙·이강래·윤한도·권태망 의원 발의)

(17시07분)

○副議長 金台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강숙자 존경하는 金台植 부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국민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강숙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현행 50%에서 10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尹漢道 의원이 소개한 동일한 내용의 법인세법개정에 관한청원을 이 법률안에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비영리

법인 중 장학법인에 한하여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할 경우 80%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고, 둘째 모든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계상에 관한 명세서뿐만 아니라 그 지출에 관한 명세서도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유동화전문회사, 선박투자회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수행하는 명목상의 회사에 대하여도 배당가능이익의 90%를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비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한 법인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그러면 법인세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83인 중 찬성 183인,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법인세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國籍法中改正法律案(김경천 의원 대표발의)(김경천·조배숙·최명현·김상현·전용학·강운태·임종석·남궁석·이양희·이재정·최용규·추미애·김화중·김태홍·전갑길·이창복·최선영·김효석·박주선·심규철·홍재형·김성순·강숙자·최영희·설훈·장성원·유재규·정세균·송석찬·권기술·이연숙 의원 발의)

13.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4. 刑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

(심규철·나오연·김동욱·권기술·김영일·전용원·민봉기·임진출·강숙자·이상배·정우택·이우재·이양희·이승철·오세훈·김락기·김용학·엄호성·김성조·박혁규·윤경식·오경훈 의원 발의)

15.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代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16. 檢事의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12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12항 국적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형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6항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사위원회 威承熙 의원 나오셔서 이상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委員長代理 威承熙 법제사법위원회 威承熙 의원입니다.

먼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국적법상의 간이귀화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양육해야 할 아동의 보호 및 외국인 배우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적취득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개정안과 같은 간이귀화의 특례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하되, 간이귀화의 기본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으로 인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등 자녀를 보호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국내 주소요건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여 법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종전에 비정규학교로 운영되어 온 소년원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학교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소년원을 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사후지도를 강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하여 보호소년의 인권신장과 완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소년원의 분류를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도록 하고, 통학사유를 이 법에서 명시하는 대신 일정한 요건하에 소년원장의 판단에 의하여 통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며, 사후지도의 개시요건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아울러 사후지도의 기간도 6월로 고정하기보다는 6월 이내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등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형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미한 형벌인 벌금·구류·과료에 처한 판결 및 약식명령 확정 전후에 범한 2개의 죄에 대하여 각각 2개의 형을 선고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현행 경합범의 요건 중 “판결이 확정된 죄”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安商守 의원, 金龍學 의원, 심규철 의원, 신기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과 2003년 11월 8일 및 같은 달 27일 정부가 제출한 2건의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이 각각 회부되어 음에 따라 이를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토대로 하나의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검사의 준사법적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첫째, 현행 검찰총장·고등검사장·검사장 또는 검사로 되어 있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 및

검사로 하여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직급을 일원화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검사들의 노령화나 검사들의 무사안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로 하여금 검사로 임명된 해부터 7년이 되는 해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한 적격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관계로 변경하면서 상명하복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검사로 하여금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셋째, 검사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되,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보직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검사의 직무대리 규정을 보완하였고, 위헌 결정된 검찰총장의 퇴직 후 2년간의 공직 임명 제한 및 정당활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검사의 직급 폐지에 따라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으로써 법관의 보수체계와 균형을 맞추고 검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안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國籍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刑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代案)

(법제사법위원회)

檢事の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副議長 金台植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7인,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시균 의원님, 權五乙 의원님, 李正一 의원님, 김기배 의원님,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찬성 쪽 계산에 넣겠습니다.

국적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 반대와 기권이 없습니다.

소년원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형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이병석 의원 의석에서 - 이병석 의원 찬성입니다.)

이병석 의원님, 절차를 밟겠습니다.

형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7. 法官등의報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8.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9.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25분)

○副議長 金台植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金容鈞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制司法委員長代理 金容鈞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경상남도 산청·합천 출신 金容鈞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법관의 보수는 법원장·고등법원부장판사 및 일반법관의 순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제외한 일반법관의 보수체계를 근무경력에 따른 단일호봉제로 함으로써 법관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장이 각하되거나 소 또는 상소가 취하되어 재판이 확정된 경우와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조정·화해로 소가 종결된 경우에는 소장·항소장·상고장 및 반소장 등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자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개정안의 내용이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아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대법원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므로 그 시행일을 2004년 2월 1일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지방법원 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 지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그 일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서울지방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분산시킴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법원행정 업무의 능률을 높여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인구 및 사건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원지방법원 본원의 관할구역인 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새로이 신설하며, 그 밖에 계룡시 및 증평군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이에 따른 관할구역 명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사항은,

첫째, 서울지방법원 동부·남부·북부·서부 및 의정부 지원을 각각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킬 경우 현재 서울지방법원 본원의 명칭을 서울지방법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울 지역에 4개의 지방법원이 생기는 것과 관련하여 그 명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재조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장래 사회의 변화나 인구 증감 등을 보아서 추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法官등의報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법제사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68인 중 찬성 166인, 반대 2인, 기권 없습니다.

법관등의보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등인지법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58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고흥길 · 배기선 · 김성호 · 김일윤 · 정범구 · 정동채 · 이협 · 강신성일 · 권오을 · 김병호 · 신기남 · 김경재 · 김택기 · 최영희 · 강성구 · 설훈 · 김문수 · 남경필 · 황우여 · 송영길 · 김희선 · 김태홍 · 박명환 · 안상수 · 김운용 · 김원기 · 김옥두 · 유재건 · 이미경 · 김용갑 · 김정부 · 이상득 · 김홍신 · 장성원 · 이훈평 · 한화갑 · 김성순 · 송석찬 · 이창복 · 김영환 · 장광근 의원 발의)

21. 청소년활동진흥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고흥길 · 배기선 · 김성호 · 김일윤 · 정범구 · 정동채 · 이협 · 강신성일 · 권오을 · 김병호 · 신기남 · 김경재 · 김택기 · 최영희 · 강성구 · 설훈 · 김문수 · 남경필 · 황우여 · 송영길 · 김희선 · 김태홍 · 박명환 · 안상수 · 김운용 · 김원기 · 김옥두 · 유재건 · 이미경 · 김용갑 · 김정부 · 이상득 · 김홍신 · 장성원 · 이훈평 · 한화갑 · 김성순 · 송석찬 · 이창복 · 김영환 · 장광근 의원 발의)

22. 청소년복지지원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심재권 · 고흥길 · 배기선 · 김성호 · 김일윤 · 정범구 · 정동채 · 이협 · 강신성일 · 권오을 · 김병호 · 신기남 · 김경재 · 김택기 · 최영희 · 강성구 · 설훈 · 김문수 · 남경필 · 황우

여 · 송영길 · 김희선 · 김태홍 · 박명환 · 안상수 · 김운용 · 김원기 · 김옥두 · 유재건 · 이미경 · 김용갑 · 김정부 · 이상득 · 김홍신 · 장성원 · 이훈평 · 한화갑 · 김성순 · 송석찬 · 이창복 · 김영환 · 장광근 의원 발의)

(17시34분)

○**副議長 金台植** 의사일정 제20항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청소년활동진흥법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소년복지지원법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沈載權 의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委員長代理 沈載權** 문화관광위원회 沈載權 의원입니다.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권리와 육성을 위한 내용도 부족하고, 청소년 활동과 복지 지원에 대한 근거규정도 없으며, 단지 청소년수련 규정이 48.6%를 차지하는 등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보다 진취적인 청소년 육성·진흥 정책을 바라는 이들에게 청소년 관련 법의 정비는 오랜 숙원인 동시에 시급한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청소년 관련 3개 법안은 현 청소년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원리와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 중심으로 개정하고,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규정은 청소년활동진흥법으로, 청소년 복지에 관한 규정은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보완·제정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법의 체계와 내용을 갖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 청소년 3개 법안 마련에는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수련시설설치·운영자협회,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 한국청소년학회, 세계청소년학회,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등 전 청소년계가 참여, ‘청소년법제 정비를 위한 청소년 관련 기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법안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은 청소년정책의 기본원칙과 정책적 근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외에도 총리실 산하의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문화관광부장관 산하로 변경했으며,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의 양성·배치를 확대토록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활동진흥법안은 청소년 활동을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으로 범주화하고, 청소년활동지원본부와 지방 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도 할인받을 수 있는 '청소년할인제'를 도입했고, 이를 위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해서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지원제도를 도입하였고,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3법에 대하여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청소년복지지원법안 중 보건복지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소관 업무와 중복 소지가 있는 복지지원사항은 복지행정의 일관성 및 효율성 차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운용상 부담이 되는 조항들은 삭제·수정하였으며, 기타 법률안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문화관광부가 주체가 되어 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삭제·수정 내지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계 및 자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 청소년활동진흥법안 심사보고서
- 청소년복지지원법안 심사보고서

(문화관광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副議長 金台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2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활동진흥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72인, 반대와 기권은 한 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진흥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5인, 반대와 기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복지지원법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金台植 부의장, 朴寬用 의장과 사회교대)

23. 農業機械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4. 農水產物流通公社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5.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7시42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3항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高珍富 의원 나오셔서 3건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農林海洋水産委員長代理 高珍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高珍富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업기계의 수급 등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그 조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업기계에 대한 품질보증 방식으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검사제도 외에 자기인증제도를 추가로 도입함으로써 우수한 농업기계의 개발·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8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공사의 매 사업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준비금 외에 별도의 준비금을 적립하여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경의선 동해선 등의 철도 및 도로가 개통될 경우 외국의 식물 등이 기차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거나 우리나라의 육로를 경유하여 외국으로 운송될 것에 대비하여 육로수입 및 국내 경유 외국 식물 등에 대한 검역 절차와 방법 등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를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農業機械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農水産物流通公社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해서는 토

론신청이 있습니다.

남궁석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석 의원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열린우리당 남궁석 의원입니다.

본인은 오늘 상정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이 농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부결시켜 주실 것을 주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의 골자를 보면, 농업기계의 판매업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정부의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농기계의 수급·검사 사항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을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자기인증제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판매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농업기계 확대 정책으로 이것은 수요자인 농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공급자인 농업기계업자를 위한 법입니다. 농업기계 사업자에게 지원된 자금은 다시 이자를 포함해서 농민에게 전가됩니다.

농기계의 과잉보급은 이미 우리 농촌을 빗더미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은 총 56억 평입니다. 여기에 논밭을 가는 농기계의 경우 경운기 89만 대, 트랙터 20만 대, 도합 109만 대로 농지 5000평당 기계 1대가 보급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산골 논밭을 감안하면 경지 4000평, 옛날의 땅 한 섬지기 농사에 기계가 1대씩 보급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적정 보급 대수의 3배 정도가 이미 농촌에 보급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농가 호당 부채가 2000만 원입니다. 호당 부채의 반은 농기계로 인한 부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논 4000평이면 80kg짜리 쌀 50가마 정도가 나옵니다. 가마당 20만 원씩 치면 1년에 약 1000만 원의 수입이 나옵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고 각종 비용을 쓰고 나면 농기계 원리금 상환은 까마득한 것이 농촌의 실정입니다.

둘째, 농업기계화기본계획에서 시장원리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농기계의 수급과 검사 기능을 삭제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행정력을 동원해 지역별로 적정한 농기계의 보급을 가이드해 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농민이 농기계를 사려 할 때 경지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웃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없는지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농기계는 TV나 전화기처럼 집집마다 가질 필요가 없는 물건입니다. 지금 농촌에는 제철에 한번 쓰고 잠자고 있는 녹슨 농기계가 창고와 들판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농촌행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여기에서 막아 주어야 합니다. ‘갑동이네가 트랙터를 샀어? 나도 하나 사자!’ 이런 식으로 열 김에 사지 말고 농기계는 어울려서 사라고 저는 지역구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형식승인을 자기 신고제로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좋은 성능을 가진 기계라도 그 성능을 정부가 한번 판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순박한 농민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농기계업자를 1 대 1로 대면시키면 순박한 농민이 백전백패하고 기계를 사게 됩니다.

본인은 농촌 출신으로 쟁기질도 해 보고 인분장군도 저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농촌을 옹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수를 기반으로 농업기계산업을 육성시켜 수출산업화하자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농촌이 무너지면 농기계산업도 무너집니다. 농촌의 기계화도 농촌의 지불 능력 범위 안에서 서서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쯤 농기계 산업은 외국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농민을 사랑하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민련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린우리당 의원 여러분!

이 법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부표를 던져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이것은 수정안이 없습니다. 수정안으로 착각하지 마시고, 이 법안에 대한 찬반의 의사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한 찬반투표입니다. 수정안은 나오지 않았습니, 반대토론은 있었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투표하신 분 중에서 수정안인지 반대토론인지를 잘 모르고 투표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투표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70인, 반대 84인, 기권 18인으로서 농업기계화촉진법중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농수산물유통공사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175인 중 찬성 175인으로서 만장일치로 식물방역법중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야생동·식물보호법안(정부 제출)

27.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8.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9. 악취방지법안(정부 제출)

30. 國家技術資格法改正法律案(代案)(환경노동
위원장 제출)

(17시5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6항 야생동·식물보호법안, 의사일정 제27항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악취방지법안, 의사일정 제30항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오경훈 환경노동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야생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 및 II급으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상위계획인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주기와 일치시켜 5년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폐수무

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범법자 등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998년 1월 1일 당시 이미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이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현행 폐촉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실시 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도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경우 결격사유뿐만 아니라 구성기준도 규정하도록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악취는 일반적인 대기오염과 달리 그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합적이며 국지적, 순간적으로 발생, 소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악취의 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악취관리지역 안의 사업장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그 악취배출시설의 가동 전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악취관리지역 밖의 지역의 경우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개선권고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현행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필요한 조치명령 및 불이행 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

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성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이 중요시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능력개발을 지속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는 한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관련한 규정의 정비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노동부장관은 기술인력의 수급 전망,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 능력의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도 처벌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야생동·식물보호법안 심사보고서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악취방지법안 심사보고서

(환경노동위원회)

國家技術資格法改正法律案(代案)

(환경노동위원장)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먼저 야생동·식물보호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 만장일치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7인 중 찬성 176인, 기권 1인으로서 수질환경보전법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179인 중 찬성 179인으로 만장일치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악취방지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만장일치로 악취방지법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1인으로 만장일치로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18시10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1항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曹雄奎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統一外交通商委員長代理 曹雄奎 통일외교통상위원회 曹雄奎 의원입니다.

2003년 7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에 대한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비준동의안은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이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2003년 12월 26일 제244회 임시국회 제1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심의,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부 의원 등단)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와 칠레 간의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정부조달시장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하여 양국 간의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만 뒤요. 그만 뒤!」 하는 의원 있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아니, 발언 중에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당당하지를 못합니까? 당당하게 반대토론하세요. 왜 발언 중에 발언을 중단시킵니까?

(「의장님, 이 의안 자체가 상정이 됐으니가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우리 국익에 엄청나게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개별적으로 상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지금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순서!

(장내 소란)

각 당 총무들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제가 지금…… 토론을 마치고 투표 방법에 관해서는 제가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대통령 보고 농민 동의 받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회의중지)

(18시19분 계속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 동의안 의결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국회 원내 분위기로 보아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31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제32항, 제33항, 세안건은 본회의에 계속 유보하겠습니다.

(「제32항, 제33항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관계 있는 법이니까 못 합니다.

지금 이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정리해서 본회의에 보고할 때까지 잠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정회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한 30분이면 가능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회의중지)

(20시49분 계속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 계시면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4. 2004년도예산안

35.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36.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04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5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允洙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允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允洙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243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8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하였습니다.

12월 19일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조정을 위한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 29일까지 동 소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동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9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의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과정 및 교섭단체 등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이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12월 29일 제9차 소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을 붙여 만장일치로 동 소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였고, 12월 30일 제24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감액사업은 소관 상임위의 감액사업, 용자·보조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사업계획 부실 또는 불요불급한 사업, 중복 소지가 있고 타당성이 낮은 사업, 절감 가능한 경상경비성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 증액소요는 삭감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하되 SOC 투자 확충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 등 경제 활성화 예산, 서민 주거환경 개선, 청년실업 해소, 보육지원 강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소요되는 예산 등에 우선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에 의한 경기 진작과 정부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한 지출 소요의 충당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으나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발생한 법령제·개정, 정책변화 등에 따른 소요예산, 즉 제2회 추경 등에 따른 국채이자, 이라크 파병 예산, 태풍 매미 피해 관련 지방비 지원 등에 한하여 적자국채발행을 통해 충당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순계 규모를 보면, 세입은 4493억 원이 감액되고 적자국채발행을 통한 공적자금예수금 등 1조 2514억 원이 증액되어서 8021억 원이 순증되었고, 세출은 1조 5645억 원이 삭감되고 예산안 제출 후 추가 소요분을 포함 2조 3666억 원이 증액되어서 8021억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117조 5429억 원에서 2003년 최종 예산 대비 0.2%가 증가한 118조 3560억 원의 모습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증액사업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농어촌 지원 8541억 원, SOC 3397억 원, 이라크 파병 등 국방 2744억 원, 산업·중소기업 2358억 원, 교육·문화 1051억 원, 선거공영제 확대 실시 1000억 원, 2003년 제2회 추경 시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 소요 등 1475억 원, 태풍 매미 피해 관련 지방비

지원 1000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5개 기금의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의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과 제2차 추경에 따른 이자분 계상 등에 따라 당초 237조 2512억 원에서 237조 6710억 원으로 419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 및 정부 내부거래를 제외하는 경우 기금사업의 실질적인 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518억 원이 순감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한편 증액사업의 조정 과정에 있어서 새 비목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8개 사항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부대의견 중 제6항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 등에서 지원토록 한다.”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가 의결한 내용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된 부분은 농어촌지원예산 중 FTA 관련 대책 예산 5842억 원이 예비비로 변경되었고, 2004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세출예산안 중 신용보증재단보조 300억 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용보증기금에 200억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00억 원 증액으로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다산장려금 및 거세장려금의 미지급에 따른 한우 농가의 심리불안 해소와 농가 간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04년도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
○議長 朴寬用 예결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4년도예산안 심사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증액 부분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朴奉欽 기획예산처장관입니다.

2004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權五乙 의원이 질문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제가 답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법 제84조를 개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해석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미리 국회운영위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유권해석을 내려서 각 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도록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權 의원, 늦은 시간이니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빨리 하십시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2004년도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7인, 기권 1인으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71인 만장일치로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이 국회에서 늦게나마 준예산 편성 없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예산안 통과에 즈음한 정부 측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항이 또 있으니 여러분 자리를 뜨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國務總理 高建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마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允洙 위원장님과 예결위원장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에는 청년실업대책과 중산·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참여복지를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지방발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과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적극 확충해 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 의지가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FTA협정비준과 관련한 농어촌 지원 예산이 비준동의안과 관련 법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소관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계상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비준동의안과 함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농어민 지원을 위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의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모두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해서 국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제17대 총선을 역사상 가장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해 나가는 데 온 정성을 쏟겠다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새해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와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국민의 역량을 국가 발전에 성공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수고하셨습니다.

37.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21시07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7항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신현태 산업자원위원회 신현태 의원입니다.

2003년도 본회의장에서 마지막 의안을 심사보고하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를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

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출보험 수요 전망을 감안하여 2004년도 수출보험계약 체결한도 총액을 2003년도보다 6조 원 증액된 65조 원으로 하고, 둘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65조 원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중장기수출거래의 2004년도 계약체결한도를 2003년도의 8조 7000억 원보다 1조 3000억 원 증액한 10조 원으로 하며, 셋째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 총액 중 예상치 못한 수출보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6조 원의 예비한도를 두고 단기 및 중장기 거래 구분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동의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尹鐵相 의원님 찬성을 포함해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 만장일치로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6차 본회의는 2004년 1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4인)

찬성의원(184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훈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옥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중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운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손 희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희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원 창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훈 평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영 달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동 영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순 형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헌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중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장광근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84인, 찬성의원 184인임)

○國籍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4인)

찬성의원(184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겹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중 호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창 달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손 회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룰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회 룰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희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중 걸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훈 평

이 희 규 임 종 석 임 진 출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동 영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헌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한 중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권오을·김기배·박시균·원희룡·이부영·이정일·정장선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84인, 찬성의원 184인임)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89인)

찬성의원(189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겹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진 박 창 달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응 설 훈
 손 회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룰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유 윤 두 환 유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영 달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용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용 택 최 돈 응 최 연 회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미 애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흥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배 설 송 응
 설 훈 손 희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유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훈 평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영 달 장 태 완 장 태 완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전 재 회
 정 균 환 정 병 국 정 동 채 정 동 채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용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정 배
 최 돈 응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흥 준 표
 황 창 주

(이병석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90인, 찬성의원 190인임)

○刑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0인)

찬성의원(190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중 하
 김 종 호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욱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회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진 박 창 달 박 현 기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91인)

찬성의원(191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종하	김종호	김종조	김태식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태홍	김택기	김송	김형오	김근태	김기배	김기춘	김덕규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김덕배	김동욱	김만제	김무성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김원웅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박재욱	박종완	박종우	박종희	김종호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박주선	박주천	박진	박창달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박현기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세환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영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희	박주선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박주천	박진	박창달	박현기
오세훈	오장섭	원희룡	유시민	박혁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두환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훈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이강래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안대륜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이용삼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오장섭	원희룡	유시민	유재규
이주영	이해구	이협	이훈평	유한열	유홍수	윤두환	윤영탁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임태희	장광근	장영달	장태완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병석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정갑윤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이해구	이협	이훈평	이희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천용택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천정배	최돈웅	최명현	최병국	장광근	장영달	장태완	전갑길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최재승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檢事の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91인)

찬성의원(191인)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창희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추미애	한충수	한화갑	현경대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황창주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法官등의報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3인)

찬성의원(171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고 진 부	고 홍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천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인 상	박 재 옥	박 종 완
박 종 희	박 주 천	박 진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청 원
설 송 응	설 훈	손 회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룰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장 광 근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조 성 준	조 재 환
조정무	조 한 천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중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현 경 대	홍 사 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2인)

김 중 호 최 용 규

(고 홍 길 · 김 희 선 · 박 희 태 · 정 갑 윤 · 조 한 천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73인, 찬성의원 171인임)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6인)

찬성의원(176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고 진 부	고 홍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천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홍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인 상	박 재 옥	박 종 완	박 종 희
박 주 천	박 진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홍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청 원	설 송 응
설 훈	손 회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룰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재 규
유 한 열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장 광 근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용학 정동채 정의화 정철기 조정무 최병국 최용규 한충수 홍사덕
 전재희 정문화 정장선 조성준 조한천 최선영 최재승 한화갑 홍준표
 정갑윤 정병국 정진석 조웅규 천용택 추미애 함석재 황우여
 정동영 정우택 정창화 조재환 천정배 최영희 하순봉 현경대 황창주
 (김종하·도종이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76인, 찬성의원 176인임)

이협 임종석 전갑길 정동영 정의화 정철기 조재환 천정배 최영희 한충수 홍사덕
 이호웅 임진출 전용원 정동채 정장선 정형근 조정무 최병국 최재승 한화갑 황우여
 이훈평 장광근 전용학 정병국 정진석 조성준 조한천 최선영 추미애 함석재 황창주
 이희규 장태완 전재희 정우택 정창화 조웅규 천용택 최연희 하순봉 현경대

반대의원(14인)

김덕배 박근혜 이상배 최용규 김성조 박헌기 이승철 홍준표 김성호 손희정 임인배 김학송 이근진 정문화

기권의원(3인)

김동욱 김정부 정갑윤 (박세환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76인, 찬성의원 159인임)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6인)

찬성의원(159인)

강봉균 고진부 권오을 김근태 김덕규 김병호 김옥두 김원기 김종호 김택기 나오연 문석호 박상규 박인상 박주선 박희태 서병수 송광호 송훈석 심재권 안상수 엄호성 유시민 윤두환 이강두 이낙연 이양희 이인기 이정일
 강성구 고흥길 권철현 김기배 김락기 김부겸 김원웅 김충조 김황식 남궁석 민봉기 박세환 박재욱 박주천 배기선 서상섭 송병대 신기남 심재철 안영근 오경훈 유재규 윤영탁 이강래 이병석 이연숙 이종걸
 강신성일 구종태 권태망 김기재 김만제 김상현 김용균 김정숙 김태식 김효석 도종이 박금자 박시균 박종완 박진 박기운 배기운 설송웅 송석찬 신영국 안경률 안택수 오세훈 원희룡 유한열 윤철상 이경재 이부영 이용삼 이재오 이주영
 강인섭 권기술 김경천 김기춘 김무성 김영환 김용학 김종하 김태홍 김희선 맹형규 박병석 박원홍 박종희 박혁규 백승홍 설훈 송영길 신현태 안대륜 양승부 원희룡 유홍수 윤한도 이규택 이상수 이윤성 이재창 이해구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투표의원(174인)

찬성의원(174인)

강봉균 고진부 권오을 김경천 김기춘 김락기 김부겸 김영환 김용학 김정숙 김태식 김효석 남궁석 민봉기 박병석 박시균 박종희 박혁규 백승홍 설송웅 송영길 김성구 고흥길 권철현 김광원 김덕규 김만제 김상현 김옥두 김원기 김종하 김태홍 김희선 도종이 맹형규 박근혜 박상규 박원홍 박주선 박희태 배기운 서병수 설송웅 송영길 강신성일 구종태 권태망 김기배 김덕배 김무성 김성조 김용갑 김원웅 김충호 김학송 나오연 남경필 문석호 박명환 박상천 박인상 박주천 박희태 배기선 서상섭 손희정 송훈석 강인섭 권기술 김경재 김기재 김동욱 김병호 김성호 김용균 김정부 김충조 김황식 남경필 문석호 박명환 박종완 박진 배기선 서청원 송병대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박주천 박진 박헌기 박혁규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영근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손희정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유재규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 석
 유한열 유홍수 윤두환 윤영탁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낙연 이낙연 이상배 이상배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상배 이연숙 이연숙 이인제
 이상수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인제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이용삼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종걸 이호웅 임종석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호웅 임종석 전갑길 정갑윤
 이주영 이해구 이협 이호웅 임종석 전갑길 정갑윤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전갑길 정갑윤
 임진출 장광근 장태완 전갑길 정갑윤
 진용원 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의화 정철기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창화 정철기 조재환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조재환 최병국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최병국 최용규
 조정무 조한천 천정배 최병국 최용규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한화갑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홍준표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김희선·임진출 의원 버튼 미조작. 실제 재석의원 174인, 찬성의원 174인임)

박주천 박진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설훈 손희정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 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유재규
 유한열 유홍수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인기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호웅
 이주영 이해구 이협 이호웅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재희 정갑윤
 정갑윤 정의화 정철기 조재환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최병국 최연희
 천정배 최병국 최용규 최재승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청소년활동진흥법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172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김성호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웅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상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완 박종희 박주선

○청소년복지지원법안

투표의원(175인)

찬성의원(175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김성호 김영환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웅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충조
 김태식 김택기 김학송 김효석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이 상 수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윤 성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인 상	박 종 완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정 일	이 주 영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진	이 협	임 인 배	전 용 학	정 병 국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청 원	최 병 국	최 연 회	최 재 승	하 순 봉
설 송 웅	설 훈	손 회 정	송 병 대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홍 사 덕	홍 준 표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반대의원(84인)			
안 경 룰	안 상 수	안 영 근	안 택 수	강 봉 균	강 인 섭	강 재 섭	구 종 태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천	김 광 원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재 규	유 한 열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배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영 탁	윤 철 상	김 병 호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옥 두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김 중 하	김 형 오	김 효 석	나 오 연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방 호	남 공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박 근 혜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박 금 자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숙	박 인 상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오	박 현 기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걸	이 주 영	서 상 섭	서 정 화	서 청 원	설 송 웅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웅	이 훈 평	송 광 호	송 훈 석	신 현 태	심 재 권
이 희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심 재 철	안 경 룰	안 대 룡	안 상 수
임 태 희	장 광 근	장 태 완	전 갑 길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유 시 민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윤 두 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우 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회	이 승 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이 용 삼	이 재 창	이 종 걸	이 호 웅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웅 규	이 훈 평	임 종 석	장 광 근	장 태 완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정 배	전 갑 길	전 용 원	정 동 채	정 문 화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회	정 우 택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웅 규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조 재 환	조 한 천	최 선 영	최 영 회
한 화 갑	허 태 열	현 경 대	홍 사 덕	최 용 규	한 충 수	황 우 여	황 창 주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기권의원(18인)			
				김 경 재	김 정 부	김 충 조	김 태 흥
				박 관 용	박 병 석	설 훈	송 병 대
				유 재 규	윤 철 상	이 희 규	임 진 출
				장 재 식	전 재 회	정 갑 윤	조 정 무
				천 정 배	추 미 애		

○農業機械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70인)

강 성 구	강 신 성 일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권 기 술	권 오 을	김 기 배
김 덕 룡	김 부 검	김 성 조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웅
김 정 숙	김 종 호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황 식	김 희 선	남 경 필	문 석 호
민 봉 기	박 시 균	박 종 완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손 회 정	송 석 찬
송 영 길	신 기 남	신 영 국	심 규 철
안 영 근	원 희 룡	유 흥 수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방 호	이 병 석

○農水産物流通公社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2인)

찬성의원(168인)

강 봉 균	강 신 성 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병 호	김 부 검	김 성 조

김성호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웅	강태망	강권기	고권오	고철현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충조	권태배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황식	김기룡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김덕성	김덕배	김병호	김부겸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옥두
박관용	박금자	박병석	박상규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박상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김원웅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박인상	박종완	박종희	박주선	김중호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설송웅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병석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박상규	박상천	박세환	박시균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박원홍	박인상	박종완	박종희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박주선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안영근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유홍수	윤두환	윤영탁	윤철상	설송웅	설훈	손희정	송광호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이병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이승철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안상수	안영근	양승부	엄호성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오경훈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이종걸	이주영	이협	이호웅	유재규	유홍수	윤두환	윤영탁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임진출	장광근	장재식	장태완	이경재	이근진	이낙연	이방호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정갑윤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이용삼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정우택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이재창	이윤성	이인제	이재오
정형근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이협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조정무	조한천	천정배	최병국	임인배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장재식	임종석	임진출	장광근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전용학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정문화	정재희	정갑윤	정동채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정진석	정창화	정우택	정장선
반대의원(1인)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형근
김정부				조한천	천정배	최병국	조정무
기권의원(3인)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선영
김형오	남궁석	박근혜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최재승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한화갑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홍사덕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5인)

찬성의원(175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야생동·식물보호법안

투표의원(178인)

찬성의원(178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명 환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서 청 원	설 송 웅
설 훈	손 희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룡	안 상 수	안 영 근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장 섭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체 정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재 식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사 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7인)

찬성의원(176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나 오 연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명 환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서 정 화	서 청 원	설 송 웅	설 훈
손 희 정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룡
안 상 수	안 영 근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장 섭	원 희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윤 영 탁	윤 철 상
이 강 두	이 근 진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상 수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회	이 연 숙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체 정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재 식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정 칠 기	정 무		
정 재 환	정 영		
최 병 국	최 재 승		
최 용 규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응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천정배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기권의원(1인)
 추미애

이주영 이해구 이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성원
 장재식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우택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성준 조응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천정배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179인)

찬성의원(179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웅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완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설송웅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오장섭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악취방지법안

투표의원(181인)

찬성의원(181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고진부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기춘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락기 김명섭 김무성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김성호 김영선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원웅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충조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나오연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상규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완 박종희 박주선 박주천
 박현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수 서상섭
 서정화 서청원 설송웅 설훈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상수 안영근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오장섭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인제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재 식 장 태 완 전 갑 길
 진 용 원 진 용 학 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주 진 우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흥 사 덕 흥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안 경 를 안 상 수 안 영 근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장 섭 원 회 룡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병 석 이 부 영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희 이 연 숙 이 용 삼 이 윤 성
 이 인 제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채 정 장 광 근
 장 성 원 장 재 식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문 화 정 병 국 정 우 택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주 진 우 천 정 배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추 미 애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흥 사 덕 흥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國家技術資格法改正法律案(代案)

투표의원(181인)

찬성의원(181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기 재 김 기 춘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원 응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충 조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나 오 연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명 환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종 완 박 종 희 박 주 선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 상 섭
 서 정 화 서 청 원 설 송 웅 설 훈
 손 희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기 남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권 심 재 철

○2004년도예산안

투표의원(169인)

찬성의원(167인)

강 봉 균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운 태
 강 인 섭 강 재 섭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덕 규 김 덕 배 김 만 제
 김 무 성 김 부 겸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기 김 정부 김 정 숙
 김 중 필 김 종 하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회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민 봉 기 박 관 용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운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재 옥 박 종 근 박 종 희
 박 주 천 박 현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백 승 흥 서 병 수

서상섭 설송웅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송신기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영근 양승부 엄호성
 오세훈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해찬 이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정갑윤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진석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1인)

전갑길

기권의원(1인)

이정일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희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서병대
 서상섭 설송웅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영근 양승부 엄호성
 오세훈 유시민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이양희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종걸 이주영
 이해찬 이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태완 전용원 전용학 정갑윤
 장영달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정갑윤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병국 정철기
 조부영 조성준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기권의원(1인)

이정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투표의원(168인)

찬성의원(167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배 김만제
 김무성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중하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병석

○2003년도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

투표의원(171인)

찬성의원(171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고흥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배
 김만제 김무성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정부
 김정숙 김종필 김중하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김정숙	김종필	김종하	김충조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김도종	김태홍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맹형규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박세환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민봉기	박관용	박명환	박병석
박인상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세환
박종희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박승국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백승홍	박재욱	박종근	박종완	박종희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송광호	박주천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송훈석	신기남	신영국	신현태
안동선	안상수	안영근	양승부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엄호성	오세훈	유시민	유용태	안대륜	안동선	안상수	안영근
유재건	유재규	윤여준	윤철상	양승부	엄호성	오세훈	유시민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유용태	유재건	유재규	윤여준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상배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이양희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부영
이연숙	이용삼	이윤성	이윤수	이상배	이상수	이용삼	이성현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정일	이양희	이연숙	이인제	이윤성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찬	이윤수	이인기	이인제	이재창
이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이정일	이주영	이해구	이해찬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종석
장광근	장성원	장영달	장태완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정갑윤	장성원	장영달	장태완	전갑길
정균환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전용원	전용학	정갑윤	정균환
정병국	정세균	정철기	조부영	정동영	정동채	정문화	정세균
조성준	조재환	조한천	천용택	정철기	조부영	조성준	조재환
최정배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조한천	천용택	천정배	최병국
최연희	최용규	추미애	하순봉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용규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홍사덕	추미애	하순봉	한충수	한화갑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함석재	홍사덕	홍준표	황우여

○2004년도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에대한동의안

투표의원(165인)

찬성의원(165인)

강봉균	강성구	강신성일	강운태
강인섭	강재섭	고홍길	구중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기재	김덕규	김덕배
김만제	김무성	김부겸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기	김정부

○出席議員(255人)

강봉균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姜雲太	姜仁燮	姜재섭	姜昌熙
高珍富	高興吉	具鍾泰	權琪述
권영세	權五乙	權哲賢	權泰望
金景梓	金敬天	金光元	김근태
金杞培	김기재	金洪春	김덕규
金德龍	김덕배	金東旭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金武星	金文洙
金秉浩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김성호 金映宣 金榮駟 김영춘 鄭의화 鄭장선 鄭鎮碩 鄭창화
 김영환 金玉斗 金容甲 金容鈞 鄭哲基 鄭亨根 趙富英 趙성준
 金龍學 金龍煥 金원기 金원웅 趙舜衡 曹雄奎 趙在煥 趙정무
 金일운 金政夫 金正숙 金鍾泌 趙漢天 朱鎮旻 趙용택 趙정배
 金鍾河 金宗鎬 金燦于 金忠兆 崔燉雄 崔明憲 崔炳國 崔秉烈
 金台植 金태홍 金택기 金鶴松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崔용규
 金學元 金형오 金홍일 金晃植 崔재승 秋美愛 河舜鳳 韓忠洙
 金孝錫 金희선 金오연 金경필 韓和甲 咸錫宰 咸承熙 許泰烈
 남궁석 都鍾伊 孟亨奎 朴錦子 玄敬大 洪문중 洪思德 洪재형
 문석호 民봉기 朴寬用 朴錦子 洪準杓 황우여 黃昌柱
 朴權惠 朴明煥 朴병석 朴병윤
 박상규 朴相千 朴世煥 朴承國
 박시균 朴源弘 朴仁相 朴在旭
 박鍾根 朴鍾浣 朴宗雨 朴鍾雄
 박종희 朴柱宣 朴柱千 박진
 박창달 朴憲基 박혁규 朴熺太
 배기선 裴奇雲 白承弘 서병수
 서상섭 徐廷和 徐淸源 설송웅
 薛勳 손희정 송광호 宋丙大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辛卿植
 신계륜 신기남 申榮國 申榮均
 신현태 심규철 沈載權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安東善 安商守
 安相賢 안영근 안택수 梁承富
 梁正圭 嚴虎聲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元裕哲 원희룡 유시민
 劉容泰 유재건 柳在珪 柳漢烈
 柳興洙 윤경식 윤두환 尹汝雋
 尹榮卓 尹鐵相 尹漢道 李康斗
 이강래 李敬在 李규택 李根鎭
 이낙연 李萬燮 李方鎬 이병석
 이부영 이상득 李相培 이상수
 李祥羲 이성헌 이승철 李良熙
 李嬾淑 李完九 李龍三 李元昌
 이원형 李允盛 李允洙 李仁基
 이인제 李在善 李在五 李在昌
 李正一 이종걸 李柱榮 이창복
 李漢東 李海龜 이해봉 이해찬
 李仁培 임종석 林鎭出 임채규
 任太熙 張光根 張誠源 장영달
 張在植 張泰玩 全甲吉 田瑢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鄭均桓
 정동영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鄭宇澤

鄭의화 鄭장선 鄭鎮碩 鄭창화
 鄭哲基 鄭亨根 趙富英 趙성준
 趙舜衡 曹雄奎 趙在煥 趙정무
 趙漢天 朱鎮旻 趙용택 趙정배
 崔燉雄 崔明憲 崔炳國 崔秉烈
 崔善榮 崔鉛熙 崔榮熙 崔용규
 崔재승 秋美愛 河舜鳳 韓忠洙
 韓和甲 咸錫宰 咸承熙 許泰烈
 玄敬大 洪문중 洪思德 洪재형
 洪準杓 황우여 黃昌柱

○請暇議員(5人)

金芳林 金雲龍 이우재 이원성
 玄勝一

○出席國務總理및國務委員

국무총리 高建
 법무부장관 康錦實
 행정자치부장관 許成寬
 과학기술부장관 吳明欽
 기획예산처장관 朴奉欽

○出席政府委員

재정경제부차관 金光琳
 문화관광부차관 吳志哲
 농림부차관 金正鎬
 환경부차관 郭決鎬
 건설교통부차관 崔在德
 노동부기획관리실장 鄭秉錫

【報告事項】

○特別委員補任

위원회	보임위원	교섭단체
윤리특별	송병대	한나라당

(12월30일)

○議案提出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박재욱 의원 대표발의)
 (12월29일 박재욱·이양희·이방호·고진부·허태열·최선영·김용학·이해구·권기술·박희태·강성구·임인배·정갑윤·박승국·박명환·김병호·이원창·정창화·김찬우·송광호·권태망·김원기·유재건·이강래·정동영·이원성·김덕배·신기남·강신성·이상득·박헌기·목요상·신경식·조웅규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겠음

食品衛生法中改正法律案(이인기 의원 대표발의)
 (12월29일 이인기·박희태·김용학·권기술·

강성구·박재욱·고진부·박종완·이정일·
최선영 의원 발의)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議案審査

檢察의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27일 정부 제출)

法官등의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刑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대표발의)

(8월1일 심규철·나오연·김동욱·권기술·김영일·전용원·민봉기·임진출·강숙자·이상배·정우택·이우재·이양희·이승철·오세훈·김탁기·김용학·엄호성·김성조·박혁규·윤경식·오경훈 의원 발의)

民事訴訟등印紙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少年院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이상 5건 원안의결)

各級法院의設置와管轄區域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國籍法中改正法律案(김정천 의원 대표발의)

(10월25일 김정천·조배숙·최명현·김상현·전용학·강운태·임종석·남궁석·이양희·이재정·최용규·추미애·김화중·김태홍·전갑길·이창복·최선영·김효석·박주선·심규철·홍재형·김성순·강숙자·최영희·설훈·장성원·유재규·정세균·송석찬·권기술·이연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수정의결)

法官등의報酬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인봉 의원 발의)

(2001년12월4일 정인봉 의원 외 40인 발의)

(폐기의결)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발의)

(2000년11월23일 안상수 의원 외 132인 발의)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김용학 의원 발의)

(2000년12월4일 김용학 의원 외 132인 발의)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심규철 의원 발의)

(2002년7월24일 심규철 의원 외 22인 발의)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02년10월22일 신기남·김경재·김근태·김상현·김성호·김원기·김원웅·김태홍·김희선·송영길·심재권·유재건·이강래·이

미경·이상수·이종걸·이재정·이호웅·임종석·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세균·천정배·최용규·추미애·함승희·허운나 의원 발의)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11월27일 정부 제출)

(이상 6건 대안폐기의결)

이상 14건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11월15일 김정부·전용학·김황식·장광근·김종하·박명환·오세훈·김정숙·이강래·윤한도·권태망 의원 발의)

(수정의결)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0월4일 심재권·고홍길·배기선·김성호·김일윤·정범구·정동채·이협·강신성일·권오을·김병호·신기남·김경재·김택기·최영희·강성구·설훈·김문수·남경필·황우여·송영길·김희선·김태홍·박명환·안상수·김운용·김원기·김옥두·유재건·이미경·김용갑·김정부·이상득·김홍신·장성원·이훈평·한화갑·김성순·송석찬·이창복·김영환·장광근 의원 발의)

청소년활동진흥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0월4일 심재권·고홍길·배기선·김성호·김일윤·정범구·정동채·이협·강신성일·권오을·김병호·신기남·김경재·김택기·최영희·강성구·설훈·김문수·남경필·황우여·송영길·김희선·김태홍·박명환·안상수·김운용·김원기·김옥두·유재건·이미경·김용갑·김정부·이상득·김홍신·장성원·이훈평·한화갑·김성순·송석찬·이창복·김영환·장광근 의원 발의)

청소년복지지원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10월4일 심재권·고홍길·배기선·김성호·김일윤·정범구·정동채·이협·강신성일·권오을·김병호·신기남·김경재·김택기·최영희·강성구·설훈·김문수·남경필·황우여·송영길·김희선·김태홍·박명환·안상수·김운용·김원기·김옥두·유재건·이미경·김용갑·김정부·이상득·김홍신·장성원·이훈평·한화갑·김성순·송석찬·이

창복·김영환·장광근 의원 발의)

(이상 3건 수정의결)

이상 3건 문화관광위원장 보고

農水産物流通公社法中改正法律案

(10월30일 정부 제출)

農業機械化促進法中改正法律案

(10월28일 정부 제출)

植物防疫法中改正法律案

(11월8일 정부 제출)

(이상 3건 원안의결)

이상 3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야생동·식물보호법안

廢棄物處理施設設置촉진및周邊地域지원등에관한法律

中改正法律案

水質環境保全法中改正法律案

(이상 3건 11월8일 정부 제출)

약취방지법안

(4월30일 정부 제출)

(이상 4건 수정의결)

國家技術資格法中改正法律案(김성조 의원 발의)

(2002년12월2일 김성조 의원 외 23인 발의)

국가기술자격법개정법률안

(10월31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대안폐기의결)

이상 6건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報告書**

2003년도수산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2003년도산림과임업동향에관한연차보고서

(이상 2건 12월29일 정부 제출)

이상 2건 12월29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